

# 치안정책리뷰

##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최경식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 -4대 사회악(惡) 특집: 성폭력-

#### 권두언

성폭력 대응, 문제는 관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미순

#### 성폭력 연구특집

성범죄자의 성적 이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성폭력 범주의 양형에서의 '형사합의'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이미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다혜

#### 치안현장탐구

전하고 싶은 말, '미안해'

보라매 ONE-STOP지원센터 상담원 김민선

#### 치안정책동향

미국 성범죄 피해아동 NICHD 인터뷰기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및 시사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감 우동석

####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 성폭력 대응, 문제는 관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 미 순



###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사유하자

최근 여군대위가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관인 소령이 ‘하룻밤만 함께 하면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업무상 각종 불이익을 주었고, 약혼자까지 있는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정부가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와중임에도, 직무상의 권한의 차이가 권력의 차이가 되어 무소불위하게 하급자를 지배하려는 직장문화 속에서 한 인간이 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고민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구제절차가 피해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쯤으로조차 고민되지 못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기폭제가 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법제화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에게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고, 성폭력 관련한 각종 정책들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피해자만 달리하여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사건은 이제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폭력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는 성에 근거한 여성차별 및 종속

의 형태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폭력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가 성에 근거한 폭력을 남성과 평등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여기거나 성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용인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보호와 통제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처럼 성폭력은 여성들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박탈하는 사회의 증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사건들은 폭력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이 연령이나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손쉽게 피해 대상이 되는 차별적이고 인권에 취약한 우리 사회구조의 산물이다.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맥락에 기초하여 성폭력 예방, 처벌, 지원정책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성폭력을 뿌리 뽑는 것은 요원하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지목하고 치안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 성폭력 정책을 재검토하자

성폭력관련 관련 법률과 정책이 변화될 때마다 경찰 역시 이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에 신속하다. 여성아동성폭력피해자 수사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성폭력사건의 처리 성과를 높이는데도 열심이다. 누구나 성폭력의 2차 피해를 얘기하고 이를 방지하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듯하다. 그러나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일선 실무자들의 통념은 제도적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여성운동은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 즉 피해자가 어릴수록, 성경험이 없을수록, 생활이 방정(方正)할수록 피해를 인정받기 쉬워지는 피해의 위계는 성폭력을 유발한 피해자의 옷차림과 행동거지,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동반한다.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사유와 고민 없이,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추진되는 일들은 현실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도록 한계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멀어지면 모든 것이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2013」에 따르면 강간발생 건수가 2008년 15,021건에서 2012년 19,621 건으로 증가하였다.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발생 건수도 매년 천여 건에 이른다. 성폭력사건의 신고율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년 실제 성폭력의 발생건수는 20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사건 중 기소되는 건은 43%로 절반에 못 미치고 이 중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은 39%에 불과하여, 전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2%만이 처벌을 받고 있다.

결국 가해자 형량강화,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되는 처벌대책은 2%의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된다. 어렵게 수면위로 올라온 성폭력 사건들 중 대부분의 가해자가 실제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 형량을 강화한다고 한들, 성폭력이 근절될 리 만무하다. 특정 범죄자에게 처벌이 집중되는 정책보다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완화, 피해자중심의 판단기준 확립 등을 통해

처벌에서 누락되는 가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가해자처벌 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머무르지 않고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성폭력의 공론화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활용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가해자 인권침해 가능성이나 재범방지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들끓는 여론에 발맞추어 각종 처벌정책을 도입하고, 일단 도입한 뒤에는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조차 두지 않는 양상을 되풀이 해왔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를 제어한다는 이유로 도입된 전자발찌제도는 미성년자 유괴, 살인죄, 강도죄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 역시 지역공동체 내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활용방안이나 가해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대책의 논의 없이 적용대상만 확대해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편승하다보니 가해자 인권이 간과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인권침해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인권의 조응 지점을 모색하고 피해자 권리의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처방보다 근본적 고민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성찰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각 부문의 성폭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PSI](#)

#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연구교수 이 미 정



## 서론

한국 사회에서 성기노출, 마찰도착, 음란전화 등의 행위를 하는 성도착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데 비해, 이들의 행동은 정신의학적 질병으로 간주되어 검거 및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성도착증(paraphilia)은 다양한 유형의 성적 일탈행위들을 동시에 수반하는 복합성을 갖기 쉬운데, 이러한 사람의 경우 광범위한 유형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체 성범죄자의 1/3이 노출증을, 아동성범죄자의 1/4이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범죄와 성도착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성도착자들의 범죄적 위험성에 주목하지 않다 보니 이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징 등의 기초자료는 물론 범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부족하고, 성범죄의 원인 및 형사사법적 대책에 있어서도 성도착과 관련된 요소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 성도착증과 성범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그 방법으로써 성범죄자들의 5가지 유형(음란전화, 성기노출, 마찰도착, 스토킹, 소아기호행위)의 성적 일탈경험이 성범죄의 정도와 자기합리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년 성범죄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의 보호관찰소와 교도소에서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남성 성범죄자 6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보고 설문조사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성도착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 집단과 일반 성범죄자 집단이 자기합리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t-test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적 일탈경험은 성도착증과 관련된 5문항(음란전화, 노출증, 성기밀착증, 소아기호증, 스토킹), 성역할 태도 11문항, 성폭력인지도 6문항, 강간 통념 9문항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12.3%만이 성도착적 일탈행위를 보였으나,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일반 성범죄자와 현저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적 일탈 집단(24.7%)이 일반 성범죄 집단(11.8%)보다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 전과가 두 배 이상 높아 성도착증 범죄자들이 일반 성범죄자들보다 성폭력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일반 성폭력 범죄 집단이 성도착증 집단보다 청소년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22.7% > 13.6%),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성도착증 집단이 청소년 피해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22.2% > 12.2%).

셋째, 성적 일탈 범죄자 집단이 일반 성범죄자 집단보다 정신분열, 우울증, 정신질환, 신체장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상

더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착증 범죄자들의 자기합리화 태도를 일반 성범죄자들과 비교해 본 결과, 성적 일탈 집단이 일반 성범죄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인지 왜곡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성도착 증세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집단이 일반 성범죄자 집단보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강간에 대해 더 왜곡된 자기합리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성도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조사해보았다. 범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과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을수록 성적 일탈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합리화 태도에서는 왜곡된 성폭력인지도가 통계적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성적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모델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적 일탈이 고착화되고 정신질환과 결합하여 성도착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 결론

본 연구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도착성 범죄를 성범죄 유형에 포함시켜 성범죄의 원인과 특성을 더욱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류하는 연구들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성범죄자에 대한 검거 및 치료감독에 반영하되, 특히 성폭력범죄자 치료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상황에 대한 자기합리화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성폭력 인지치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도착증 및 정신질환 병력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게 되면 성범죄자들의 경우 반복적인 범죄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개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mailto: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찰관 중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께서는 학위논문 1부를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서의 ‘형사합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다혜

### 들어가는 말

작년 대법원에서 개최한 형사법관 포럼에서, 성폭력 범죄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높아졌는데, 그 가장 큰 요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 최근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낮은 양형”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엔 ‘형사합의’가 존재한다.

### 형사합의란?: 성폭력 범죄에서 합의의 2차 피해

형사합의는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피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보상 내지 개인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법기관에 표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형사합의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형사합의 후 사법기관에 제출되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진다. 예컨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라는 소송요건이 사라지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기소유예사유가 되거나 양형시 주요한 감경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의 관행상 형사합의는 교

통사고나 폭행, 사기사건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피의자나 피해자가 해야 하는 아주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는 별도의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쉬운 피해회복 절차일 수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발생한 피해와 손실을 스스로 원상회복함으로써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이나 법원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학교로 찾아와 반복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강요하여 2차 피해를 경험한다고 호소한다. 심지어 합의해주지 않으면 성폭력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며,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심어 주기도 한다. 다른 범죄에서와 달리 성폭력 범죄에서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방향을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범죄에서와 달리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합의종용과 강요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는 이유는 성별화된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성폭력 범죄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로 사회적 낙인을 부여받게 되는 상황,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는 사실로 가족의 명예와 위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성폭력이 범죄 피해가 아니라 성적 관계로 인식되는 상황들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위축되고 지지받지 못한 채 형사절차를 경험하게 되며,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나 종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하고 오히려 공포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는 피해자를 울리기만 하는가?:  
피해자의 관점으로 형사합의 다시 보기**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불리한 사회적, 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사합의 과정은 2차 피해가 되기도 하며, 이 점에서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에서의 합의종용 문제와 합의의 강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 형사법관포럼에서 역시 법관들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라도 양형을 정할 때에 결정적인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형사합의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근절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형사합의를 결정적인 참작사유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경험과 관점들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합의를 원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해자 측과 합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자신의 피해를 가지고 돈을 놓고 밀고 당기는 가운데 마치 성매매를 하듯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피해에 대해 대가를 바라고 거래하는 것”으로 평가절하 해왔다.

그러나 이는 형사합의를 선택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태도일 뿐이다. 실제 가해자측과의 합의를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합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해결방식으로 합의를 의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를 피해자 자신 또는 타인에게 저지르지 않는 것을 원한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책임인정과 처벌이 아닌 피해회복이라는 책임 이행을 형사합의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면 형사합의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서의 형사합의에 대한 개선방향은, 단지 합의를 양형요소에서 배제하거나 축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의의 과정과 내용을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및 사죄라는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형사합의를 원했는지, 합의의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압력은 없었는지 혹은 2차 피해가 없었는지, 합의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향이었는지,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인정과 반성 및 사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형사합의를 또 다른 사건해결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시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PSI](#)



## 전하고 싶은 말. ‘미안해’



보라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상담원 김민선

**원** 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즉각적인 위기개입을 위해 상담사와 여성 경찰관이 1년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상담, 의료, 수사,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 거기 원스톱지원센터죠?”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지 5년을 넘어서며 무더지길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을 한 내담자와 대면할 때면 좀처럼 혼란스런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런 그 자리에 내담자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번뜩 정신을 차린다. 지금부터 나는 내담자를 둘러싼 장막을 걷어내고 그에게 안전함과 안식처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심리적, 신체적 외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임신의 경우는 피해자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원하면 낙태를 허용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형법의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제14

조)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수술지원에 앞서 병원에서는 정말 성폭력 피해자가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혹시라도 아닐 수 있음을 대비하며 원스톱지원센터에 성폭력피해자가 맞는지 입증해줄 것을 요청한다.

나는 합법적이라는 이 과정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로하지 못하고 생채기를 내는 것만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든다. 그녀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힘들게 센터의 문을 두들기며 수술을 결심했고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금부터 나와 그녀는 몇 개의 크고 작은 관문을 통과하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성폭력 피해가 맞나요?

첫째로 성폭력 피해의 입증이라는 첫 관문을 마주하게 된다. 자칫 강간 피해를 가장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내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담사와 수사관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로 인한 임신이 맞는지’, ‘왜 이제야 왔는지’ 등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우리는 그녀를 믿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그녀 앞에서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지 퍼즐을 맞춰본다.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어렵다.**

다음으로 상담사, 수사관, 간호사,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모여 내담자 사례 개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어떤 이는 ‘왜 피해 당시 신고하지 않았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또 다른 이는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며 내담자를 이해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임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례회의가 열리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비슷한 얘기를 나누고 답답함을 토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필자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사로 혹여나 낙태수술의 지원이 안 되거나, 수술 지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할 때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하고자 앉아있는 직원들의 관점이 아닌 그 곳에는 없는, 자신의 몸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조차 할 수 없는 그녀, 그녀가 염려될 뿐이다.

**기쁜 마음을 전하고 나니 미안함이 밀려든다**

한참의 논의 끝에 내담자의 수술지원이 결정되었고,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내담자를 위해 서둘러 전화를 한다.

“많이 기다리셨죠?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빨리 진료날짜 예약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전하는 그녀의 말에 나는 뿌듯함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성폭력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법적인계와 사례논의 과정으로 인해 즉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센터에서는 폭력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귀 기울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내 마음과 같지 않게 피해자의 모든 요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원고를 부탁받았을 때 그 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 함께하면서 보람된 일을 적어볼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볼까? 등 생각들이 많았는데 손이 가는 데로 두서없이 글을 써놓고 보니,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꺼내놓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한지 5년.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처음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겨본다. 그들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함께하는 것. 지금의 내 자리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강소영 선임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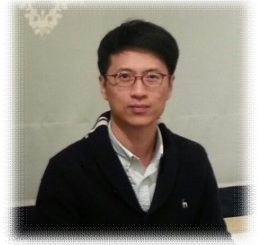
편집위원 : 권태형,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374 (경비) 61-2374
- e-mail : webmaster@psi.go.kr

## 미국 성범죄 피해아동 NICHD 인터뷰기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및 시사점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 경감 우 동 석

### 배경

대부분의 아동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거인 경우가 많으며, 수사진행과 공판단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기억에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된다.

최근 연구들은 피해 아동에게서 사건에 대한 기억력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그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조사관의 인터뷰 능력 및 피해아동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인터뷰 기법을 제시하여 왔다.

특히,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D)에서 제안되어 2000년대 초부터 널리 활용된 성범죄 피해아동 인터뷰 기법(NICHD Interview Protocol)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인터뷰 기법이 지녀야 할 핵심 요소인 'open-ended recall prompts'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진술의 경우뿐 아니라, 아동이 범죄의 목격자로서 조사받는 경우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인터뷰 기법에 대하여 그 개괄적인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 및 의의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NICHD 인터뷰 기법 구조

#### ○ The introductory phase(도입부):

도입부에서는 조사관이 피해아동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인터뷰 과정의 기본원칙 및 요구되는 사항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

예) “만일 내가 하는 질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 ○ The rapport-building part(라포 형성단계):

이 과정은 피해아동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조사관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그 다음 해당범죄와 관련 없는 최근의 경험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다음단계에서 사용될 'open-ended recall prompts' 인터뷰 기법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예) “자, 나는 \_\_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_\_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_\_와 \_\_가 한 일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며칠 전은 \_\_의 생일파티가 있었지요.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전부 말해보세요.”

#### ○ The substantive phase(실체 확인단계):

이 단계에서는 피해아동에게 비암시적인 질문들을 통해 사건을 특정하고, 'open-ended'질의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확인한다.

예) “그것에 대하여 전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것

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해 보세요... 그날로 돌아가 \_\_(피해아동에 의해 기술된 특정사건) 부터 이 사건(피해아동에 의해 기술된 해당 범죄)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_\_(피해아동에 의해 기술된 특정인/물체/행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open-ended’ 질의 이후, 조사관은 일부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아동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진술을 청취하기도 한다.

예) “잠시 전에 이웃집 아저씨에 대하여 언급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만일 피해아동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화가 사용될 수 있다.

예) 특정 정보가 언급된 인터뷰 중: “네가 \_\_(특정 시간/장소)에서 \_\_와 이야기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엇에 대하여 대화하였나요...”

마무리단계에서 조사관은 피해아동이 진술하고 싶은 모든 정보가 진술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예) “\_\_는 오늘 많은 것들을 도와주어서 고마워요... 혹시 다른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나요... 나에게 질문할 것이 혹시 있나요... 나와 다시 이야기 하고 싶으면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 NICHD 인터뷰 기법의 효과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NICHD 인터뷰 기법은 아동피해자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조사 기법으로 확인되어왔다.

특히, 최근 유타주에서는 본 조사기법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아동 1,280명에 대한 사례를 추적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NICHD 인터뷰 기법 활용 후 사건의 기소율은 35.8% (551건 중 198건)에서 43.2% (729건 중 315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1> 인터뷰 조건에 따른 결과

Case outcome (variable)	Pre-protocol		Protocol		Total	
	n	%	n	%	n	%
Unfounded	58	10.5	61	8.4	119	9.3
Not cleared	34	6.2	23	3.2	57	4.5
Screened declined	124	22.5	107	14.7	231	18.0
Insufficient evidence	49	8.9	62	8.5	111	8.7
Exceptionally cleared	46	8.3	57	7.8	103	8.0
Referred	18	3.3	66	9.1	84	6.6
Arrest/ charges filed	198	35.9	315	43.2	513	40.1
Arrest charges not filed	19	3.4	32	4.4	51	4.0
Pending	3	.5	3	.4	6	.5
Inactive	2	.4	3	.4	5	.4
<b>Total</b>	<b>551</b>	<b>100.0</b>	<b>729</b>	<b>100.0</b>	<b>1280</b>	<b>100.0</b>

출처) Pipe et al., (2006). Retrieved from <https://www.ncjrs.gov/pdffiles1/nij/grants/224524.pdf>

재판에 회부된 사건 중, 본 조사기법이 적용된 사건의 94.1%(17건 중 16건)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53.8%(13건 중 7건)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표 2> 인터뷰 조건에 따른 최종처분결과

Disposition	Pre-protocol		Protocol		Total		χ <sup>2</sup> (1)
	n	%	n	%	N	%	
Still active/No information	10	5.05	7	2.22	17	3.31	3.04
All charges dismissed	15	7.58	36	11.43	51	9.94	2.02
Trial	13	6.57	17	5.40	30	5.85	.30
Not guilty	6	3.03	1	.32	7	1.36	6.65**
Guilty	7	3.54	16	5.08	23	4.48	.67
Plea agreement	160	80.81	255	80.95	415	80.90	.00
Pled guilty	105	53.03	177	56.19	282	54.97	.49
Plea reduced	52	26.26	76	24.13	128	24.95	.30
Diverted	3	1.52	2	.63	5	.97	.97
<b>Total</b>	<b>198</b>	<b>100.00</b>	<b>315</b>	<b>100.00</b>	<b>513</b>	<b>100.00</b>	

출처) Pipe et al., (2006). Retrieved from <https://www.ncjrs.gov/pdffiles1/nij/grants/224524.pdf>

피해자의 연령별로는, 7~9세의 피해아동의 경우 NICHD 조사기법이 적용되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본 조사기법을 숙지한 조사관으로부터 인터뷰를 받은 경우 기소율은 41.5%에서 63.5%로 증가하였다.

<표 3> 기소된 사건의 비율

Victim's age (years)	Interview condition	n	% with filed charges	$\chi^2$	df
2.8 - 4	Pre-protocol	108	25.9	3.80†	1
	Protocol	90	38.9		
	Total	198			
5 - 6	Pre-protocol	83	50.6	.36	1
	Protocol	140	46.4		
	Total	223			
7 - 9	Pre-protocol	135	41.5	14.61***	1
	Protocol	167	63.5		
	Total	302			
10 - 13	Pre-protocol	161	44.7	2.01	1
	Protocol	209	52.2		
	Total	370			

†Likelihood Ratio Chi-square  
 †p < .06; \*\*\*p < .001

출처) Pipe et al., (2006). Retrieved from <https://www.ncjrs.gov/pdffiles1/nij/grants/224524.pdf>

### 연구결과의 의의 및 시사점

NICHD 인터뷰 기법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수사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open-ended recall prompts’ 방식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거의 모든 연령대의 아동들로부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CHD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나는 특성 및 경향은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및 경찰의 수사활동 방향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기법의 차이에 따라 실제 기소율 및 유죄판결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아동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victim-friendly’ 수사환경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범죄자의 검거, 기소 및 유죄판결이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할 전문 조사관 양성 및 이들의 관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척결과 예방에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PSI**



####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동향’에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한 원고 중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mailto: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10.25(금) 경찰공제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에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유지용 연구관이 학교폭력, 신동욱 연구관이 가정폭력 그리고 김현숙 연구관이 식품범죄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연구관 간담회 개최**

◆ 신임 기획운영과장(총경 진정무) 부임에 따라 업무 활성화 및 소통을 위한 연구실별 간담회를 9.11~17 동안 개최하였다.

**치안전망 2014 발간팀 회의**

◆ 9.26(목) 연구부장 및 「치안전망 2014」 발간팀은 치안전망 2014 발간팀 회의를 개최하여 발간계획 및 세부 목차 조정 등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경찰대학 교내 연찬회**

◆ 9.26(목) 경찰대학 교내 연찬회에서 정책기획연구실 이춘삼 연구관, 안보대책연구실 송경호 연구관, 수사구조개혁연구실 김현숙 연구관이 발표를 하였다.

**외부 연구용역과제 중간발표회**

◆ 9.25(수)부터 10.7(월)까지 ‘경찰관서 등급별 관서운영경비 적정성 검토’ 등 2013년 용역연구과제 중 10건에 대해 경찰청 과제담당자, 실별 연구관 등이 참여하는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연번	일자	주제 및 연구책임자
1	9.5	경찰관서 등급별 관서운영경비 적정성 검토 - 최상욱 교수(고려대)
2	9.13	4대악 범죄에 대한 상황통제기법 적용 및 효과성 분석 : 성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 윤우석 교수(계명대)
3	9.16	집회 해산명령의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 김택수 교수(계명대)
4		인터넷 공조수사에 관한 법체계 정비방안 - 안영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9.26	‘각국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비교·관찰을 통한’ 한국경찰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신교 교수(김천대)
6	9.27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김상운 교수(대구가톨릭대)
7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서 참여의무 조항 개선방안 연구 - 박형식 교수(중부대)
8	9.30	용역폭력방지를 위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범위 연구 - 김원중 교수(청주대)
9	10.4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연구 - 윤옥경 교수(경기대)
10	10.7	수사구조개혁 관련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이정민 교수(단국대)

**교통부문 R&D 기획과제 회의**

◆ 10.10(목) 연구소에서는 최경식 치안정책 연구소장, 조요셉 연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미래발전과, 도로교통공단, 항공대 및 개발업체 등이 모여 교통대책연구실 김남선 연구관의 진행으로 ‘교통부문 R&D기획과제’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10월 23일 제28기 치안정책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다.

◆ 김용민 연구관(사회안정대책연구실)은 10월 31일 경찰대학 2학년 학생들에게 ‘국민 인식과 판례 변화에 따른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 김남선 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은 10월 26일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경찰의 C-ITS 추진방안 연구’를 주제로 논문발표를 하였고, ITS연구위원회 세션에서 토론하였다. 10월 29일 도로교통공단 정기세미나에서 ‘점(點)형 코일 센터 차량검지기술 소개’에 대해, 10월 30일 성남시 주민설명회에서는 ‘둔천대로 교통지체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 강소영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9월 13일 경찰청 외부용역과제 심사 및 10월 4일 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심리자문위원회’에 외부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한국경찰연구 제12월 제3호에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유형에 따른 인식조사”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김현숙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9월 27일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전문가토론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0월 8일 및 10일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제3기 경찰형사법과정생을 대상으로 형사절차법을 강의하였다.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10월 18일 한국행정학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윤리적 경찰활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10월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주관한 학술세미나에서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현황과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연구소 인사**

◆ 전출: 9월 8일 조상현 총경이 방배경찰서장으로, 9월 9일 김미숙 행정관이 경찰대학 총무계, 강금명 행정관이 직무교육계로 전출하였다.

◆ 전입: 9월 8일 박채완 총경이 생활안전대책연구실로, 9월 9일 박명아, 윤정림 행정관이 기획운영계로 전입하였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전경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li> <li>•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li> <li>•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li> <li>•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li> </ul>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li> <li>•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li> </ul>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li> <li>•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li> <li>•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li> <li>•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li> </ul>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li> <li>•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li> </ul>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li> <li>•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li> </ul>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li> <li>•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li> </ul>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li> <li>•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li> <li>•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li> </ul>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li> <li>•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li> <li>•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li> <li>•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li> <li>•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li> </ul>

